

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

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『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』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1일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
1. 지원개요

- (신청기간) 2024. 10. 21.(월) ~ 11. 18.(월)
- (지원금액)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(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원)
※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(24년 7월 ~ 10월)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
ex-1) 24. 7월(8만원), 8월(8만원), 9월(8만원) → 24만원 지원
ex-2) 24. 7월(11만원), 8월(11만원), 9월(11만원) → 30만원 지원
- (지원대상) 아래 ① ~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

* 24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는 중복 지원 불가

-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(가족,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)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(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)
- ② 2024. 4. 22.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(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)
-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(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)
※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**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**
※ 24년 1월 이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6천만원 이하
ex) 24. 3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- (6백만 ÷ 3개월) × 12개월 = 24백만원
- ④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'소상공인' 인 경우
(상시근로자 5인 미만 /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명 미만)
※ 1.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/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(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)
2.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/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

○ (지원제외 및 환수 대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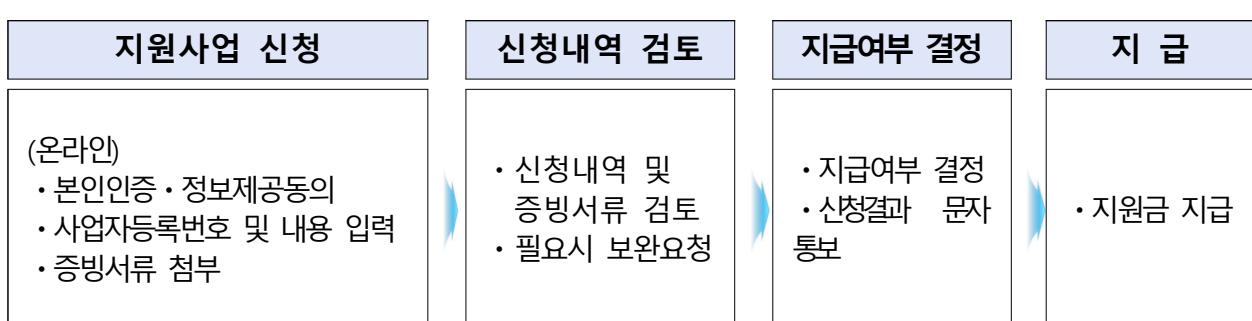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/ [참고1] 지원제외업종 참고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·무등록·무허가 사업자 / 사업자등록증 미소유
- 무점포사업자
- 가족(배우자 포함)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
-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비영리기업 · 단체 ·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-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(허위자료 제출 등)
-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 지원대상 확정 후 휴·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
2. 지원방법 및 절차

□ (지원방법)

- 신청기간 : 2024. 10. 21.(월) ~ 2024. 11. 18.(월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(<https://rent.djbea.or.kr>) / 24시간 접수
 - ※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
 - ※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
 - ※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
- 문의전화 : 042-380-3099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)
 - / 유성구 가정북로 96, 501-3호
 -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, (점심시간) 12:00 ~ 13:00 제외

□ (지원절차) *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

□ (제출서류)

* 방문하실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

사업신청 시 제출서류		발급처
①	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(은행 날인) ※ 현금지급 인정 불가	본인
②	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<지원금 입금용>	
③	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	국세청 흠택스, 정부24
④	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인과 계약자,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)	본인
⑤	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전체인원)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,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⑥	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발급본) <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> 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	대법원 전자기족관계 등록시스템, 동 행정복지센터
⑦	매출액 증빙	① 간이과세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: (개인)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(직전년도) (법인)표준재무제표증명(직전년도)
⑧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흡택스, 정부24
⑨	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	대법원 인터 넷등기소, 정부24

4. 유의사항
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
중복·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
-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5. 불임

- 참고 1) 지원제외 업종

참고 1 지원제외 업종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통주점업
56212	무도유통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 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
표준산업분류	업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각장애인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통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통주점업(56212)
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통주점업(56211), 무도유통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